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3. 31.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0년 3월 19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0년 3월 25일

라. 상정일자: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0. 3.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

가. 제안이유

- 신길12재정비축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부채납지에 영구시설물(공립단설 유치원,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유)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토지개요

- 위 치: 영등포구 신길동 339-30번지 일대(신길5동)
- 대지면적: 1,250 m^2 (※ 기부채납지 총 대지면적: 2,890 m^2)
- 소 유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사회복지시설
- 공시지가: 4,500백만원

○ 건축개요

- 위 치: 영등포구 신길동 339-30번지 일대(신길5동)
-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4층(건축면적 750 m^2 , 연면적 3,200 m^2)
- 용 도: 공립 단설 유치원
- 시설내역(안): 교실, 놀이시설, 강당, 조리실 및 식당 등

○ 동의내용 및 대상

- 동의내용: 공유재산(구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 동의대상: 건축물(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200 m^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동의안은 구유지 상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타 지자체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지자체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양 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법률상·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한 공립단설유치원의 축조는 우리 구 교육행정의 공익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유치원 취학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 번호	194
----------	-----

제출년월일: 2020. 3.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우리 구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부채납지에 지자체공동설립형 공립단설유치원인 (가칭)신길유치원을 설립함으로써 남부8취학권역의 공·사립 유치원 간 수용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등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여 꿈이 실현되는 교육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11에 의거 구유지상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유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개요

- 위 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39-30번지 일대(신길5동)
 - 대지면적: 1,250㎡ (* 기부채납지 총 대지면적: 2,890㎡)
 - 소 유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사회복지시설
 - 공시지가: 4,500백만원
- (※ 해당지역 2019년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 3,600천원)

나. 건축개요

-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9-30번지 일대(신길5동)
- 용 도: 공립 단설 유치원
- 규 모: 지하1층~지상4층(건축면적 750 m^2 , 연면적 3,200 m^2)
- 시설내역(안): 교실, 놀이시설, 강당, 조리실 및 식당 등

구 분	A동 (사회복지시설)		B동 (유치원)	
	면적(㎡)	용 도 (안)	면적(㎡)	용 도 (안)
연면적	5,380		3,200	
4층	428	50+센터 프로그램실	150	조리실 및 식당
3층	984	50+ 사무실, 교육실	750	유치원 교실, 놀이시설, 강당
2층	984	여성종합지원센터	750	유치원 교실, 기타실
1층	984	맘튼튼지원센터, 어린이집	750	유치원 관리실, 공동활용공간
지1층	1,000	공동이용시설(강당, 독서공간 등), 기계실	800	기계실, 주차장
지2층	1,000	주차장		

- 시 설 비: 8,500백만원(시교육청)

다. 그간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2019. 3. ~ 2022. 10.

- 신길12구역 무상귀속부지 활용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기본계획(안) 수립(유치원 포함)(영등포구): `19. 3.
- (가칭)신길유치원 설립 기본계획(안) 수립(시교육청): `19. 5.
- 교육환경평가(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승인): `19. 6.~9.
-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을 위한 영등포구-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영등포구-시교육청): `19. 7. 5.
- 재정투자심사(시교육청): `19. 10.~12.
- 공유재산심의회(시교육청_건축물, 구의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조건부 승인): `20. 3.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영등포구의회): `20. 3.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시의회): `20. 4.
- 공유재산심의회(영등포구_토지 무상사용): `20. 5.

- 추정 예산반영(시교육청): `20. 5.~6.
- 설계공모(영등포구-시교육청): `20. 5.~9.
- 실시설계(영등포구-시교육청): `20. 10.~`21. 4.
- 착공 및 준공(영등포구-시교육청): `21. 5.~`22. 9.
- 유치원 개원(시교육청): `22. 10. 또는 `23. 3.(※ 중간개원 여부 미정)

라. 주요 협약 내용

- 건물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 부담: 서울특별시 교육청
- 건물 소유권: 서울특별시 교육감
- 건물 운영 및 관리: 서울특별시 교육감(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
- 토지 제공기간: 활용목적 변동(유치원 폐원)시 까지
- 토지 사용료: 면제

3. 동의내용 및 대상

가. 동의내용: 공유재산(구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나. 동의대상: 건축물(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200㎡)

※ 설계과정에서 시설내역 변동 가능

4. 참고사항

가. 2019학년도 남부8취학권역 내 유아수용 여건

(자료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5월 작성)

○ 남부8취학권역내 유치원 현황: 15개원 (공립5, 사립10)

○ 2019학년도 남부8취학권역 내 유아수용 여건

(단위: 명)

취원대상 유아수(A)	유치원 정원(B)			유치원 취학수요(C)			과부족(B-C)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3,327	336	1,627	1,963	1,924	689	2,613	△1,588	938	△650

- (공립 취학수요) 공립 정원대비 **1,588명 부족**

- (사립 취학수요) 사립 정원대비 **938명 초과**

※ 남부8취학권역은 대림1~3동, 신길1동, 신길3~7동, 영등포본동

유치원 정원은 검토대상 유치원 원아수를 제외하고 산정

취학수요 = 취원대상유아수 × 취학권역별 취학수요 비율

나. 관계법령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